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4679호

시행일자 2020. 7. 16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워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469호 (2020.6.2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3586호 (2020.6.25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0호 (2020.7.15.)
- 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26호, 2020.6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주요내용 :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급여기준 신설 등 13항목 개정
- 시행일: 2020년 8월 1일부터
-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-202-2741

붙임:고시 개정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